



III 주요 수사 내용

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업의 허구성 확인

- 이번에 적발된 가상화폐 관련 금융다단계 사범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통용가능한 특정 가상화폐를 독자 개발하였고 해당 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니 코인을 구입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음
- 그러나, 실제 가상화폐 자체를 개발한 사실이 없거나, 가상화폐를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용가능성이 없고, 환전도 불가능하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미끼에 불과하였음

이 사건 가상화폐의 실체

▣ A코인의 경우

- A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고, A코인의 시세도 내부 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계획이었으며, 주장한 바와 달리, 외국은행 명의 지급보증서도 위조된 것이었음

▣ B코인의 경우

- B코인은, B코인 다단계 조직이 급조한 'B커피전문점' 외에서는 사용될 수 없었고, 자체 개설한 거래소에서 B코인의 시세를 임의로 조작함
- B코인 판매대금도 홍콩 본사에 송금되지 않고 대포계좌로 이체, 소진하여 현금 환전 불가

▣ C코인의 경우

- 코인 생성 프로그램 개발 없이 지갑어플만 개발하여, 투자 회원들에게 그 투자금에 따라 코인이라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를 부여한 후, 소수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미리 돈을 주고 기프티콘을 구입해두었다가 투자 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해당 코인을 이용하여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 미리 확보해둔 기프티콘과 교환해주어 마치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코인이 개발된 것처럼 홍보, 투자금 수신

첨부: 검찰보도자료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